



주거용 수도 서비스 중단에 관한 정책(Policy on Discontinuation of Residential Water Service)

공익 시설 법규 섹션 16481 이하 참조

건강 및 안정 법규 섹션 116900 이하 참조

목적:

본 정책은 서비스 통지, 요금 및 중단을 포함해 주거용 서비스 요금 체납 계좌 징수를 위한 Fallbrook Public Utility District의 행정 조치를 열거합니다. 본 정책은 법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District 웹사이트에 공개될 것입니다. 본 정책의 약관에 따라 요금 미납으로 인한 수도 서비스 중단을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시려면 District((760) 728-1125)로 전화하십시오.

정책:

Fallbrook Public Utility District는 체납 고객에 대해 District의 행정 법규 약관과 본 주거용 수도 서비스 중단 정책에 따라 주거용 수도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체납 계좌:

이 문서에서 체납 계좌는 공과금 납부 기한 다음날부터 미납 상태인(그리고 분할 납부 계약을 하지 않거나 대체 지불 일정을 정하지 않은) 계좌로 정의됩니다. 다음 규칙들이 체납 계좌 징수에 적용됩니다.

1. 소액 체납 계좌:

체납료가 50 달러(\$50) 이하인 경우에는 다음 청구 기간으로 이월되어 다음 번 공과금에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이 체납료는 연체료로 평가되지 않으며 추후 징수 조치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2. 연체료:

납부 기한일로부터 30 일이 지난 후에도 공과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31 일째에 고지서 처리 수수료 30 달러(\$30.00)가 평가됩니다. District 는 납부 기한일로부터 30 일 지나기 2 일 전에 곧 발생할 연체료에 대해 고객에게 전화로 고지하기 위해 합당하고 성실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District 는 고객이 갹신하지 않은 전화 정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3. 연체료 면제:

고객의 요청이 있을 시, District 는 12 개월 안에 한 번 연체료를 면제해줍니다.

4. 이전에 잠긴 계량기:

수도 계량기가 이미 잠겨 있는 주거지에는 체납 고지서를 발송하지 않으며 추가 요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5. 대체 분할 납부:

정상적인 지불 기간 내에 수도 서비스 요금을 낼 수 없는 고객은 연체료 또는 서비스 중단을 피하기 위하여 대체 분할 납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District 는 해당 요청을 둘러싼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분할 납부가 정당한 조치인지 여부에 관한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분할 납부에는 납부 기한 연장 또는 할부 상환 플랜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섹션 하에서 허가된 분할 납부의 약관을 준수하지 않거나 이후 발생한 요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서비스 중단을 알리는 서면 고지서가 발행될 것입니다. 서비스 중단 고지서는 영업일 기준으로 서비스가 중단되기 5 일 전에 주거지의 문고리에 걸어두는 식으로 배송됩니다.

6. 의료 및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한 분할 납부:

District 는 아래의 세 가지(3)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고객에게 서비스 중단을 피할 수 있는 분할 납부를 허락합니다. 분할 납부 약관은 District 가 재량에 따라 선택합니다.

a. 일차 의료 제공자가 발급한 의료 증명서

고객이 일차 의료 제공자(내과 전문의, 일반 개업의, 산부인과 전문의, 소아과 전문의, 가정의학과 의사, 면허가 있는 의료 보조자, 일차 의료 진료소, 종합병원,

또는 외래환자 진료소)가 발급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증명서에는 수도 서비스를 종료하면 해당 주거지 거주자의 생명이 위협을 받거나 그 거주자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을 것입니다.

b. 재정적 곤란

고객은 자신이 District 의 정상적인 청구 주기 안에 주거용 수도 서비스 요금을 지불할 재정적 능력이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i) 가계 소득 수준이 연방 빈곤선의 200% 미만이라는 것을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선언합니다, 또는 (ii) 가계 구성원 중 한 사람이 다음 혜택의 현재 수혜자임을 증명하는 증빙 서류를 제출합니다

- CalWorks
- CalFresh
- 일반 지원
- Medi-Cal
- 생활 보조금/캘리포니아주 납세 보조금 프로그램
- 여성, 유아, 어린이를 위한 캘리포니아 특별 영양 보충 프로그램

c. 분할 납부

고객은 District 가 선택한 분할 납부 제도를 기꺼이 수용해야 합니다. 다음 청구 기간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분할 납부는 할부 상환 플랜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플랜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고객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할부 상환 플랜은 District 가 정한 기간 동안에 미납 요금을 할부로 상환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이며 그 상환 기간은 공과금의 원래 납부 기한에서 12 개월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고객은 할부 상환 플랜의 약관을 준수해야 하며 이후 각 청구 기간마다 납부해야 할 요금이 누적되더라도 할부 상환을 계속 해야 합니다. 고객이 할부 상환 플랜에 따라 체납 요금을 지불하고 있는 동안에는 이후 발생한 미불 요금에 대하여 분할 납부를 요청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섹션 하에서 허가된 분할 납부의 약관을 준수하지 않거나 60 일 동안 이후 발생한 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서비스 중단을 알리는 서면 고지서가 발행될 것입니다. 서비스

중단 고지서는 영업일 기준으로 서비스가 중단되기 5 일 전에 주거지의 문고리에 걸어두는 식으로 배송됩니다.

7. 서비스 중단 서면 고지서:

District 는 체납 기간이 최소 60 일 이상이 되기 전까지는 미납을 이유로 수도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District 는 수도 서비스가 중단되기 최소 15 일 전에 기록상 고객에게 우편으로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서비스 중단 서면 고지서는 해당 계좌에 지정된 우편 주소로 발송됩니다. 우편 주소와 수도 서비스 수급 주소가 다르면, 서비스 수급 주소로도 또 한 통의 고지서가 우편 발송됩니다. 서비스 중단 서면 고지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 고객의 이름과 주소
- 체납액
- 서비스 중단을 피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 지불 기한 또는 분할 납부 기한
- 분할 납부 신청 절차에 대한 설명
- 공과금에 관한 이의 제기 절차에 대한 설명
- District 전화번호와 District 의 서면 징수 정책에 연결되는 웹 링크

a. 개별 계량기가 장착된 주거지의 세입자/입주자에게 보내는 고지서

District 는 수도 서비스 계좌가 체납되어 수도 서비스를 중단해야 할 경우 서비스 중단 최소 10 일 전에 서면 고지서를 통해서 입주자에게 통지하기 위하여 합당하고 성실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서면 고지서는 세입자/입주자에게 District 의 고객이 될 권리가 있음과 체납 계좌의 체납액을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알릴 것입니다.

b. 마스터 계량기를 통해 서비스가 제공되는 다세대 복합 건물에 거주하는 세입자/입주자에 대한 고지서

District 는 수도 서비스 계좌가 체납되어 수도 서비스를 중단해야 할 경우 서비스 중단 최소 15 일 전에 서면 고지서를 각 거주지 문고리에 걸어두는 방법으로 입주자에게 통지하기 위하여 합당하고 성실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각 거주지 문에 고지서를 게시하는 것이 합리적이거나 실행 가능하지 않다면, District 는 고지서 사본 두 통을 각

접근 가능한 공동 구역과 구조물 출입 지점에 게시할 것입니다. 서면 고지서는 세입자/입주자에게 District 의 고객이 될 권리가 있음과 체납 계좌의 체납액을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알릴 것입니다.

8. 수도 잠금 48 시간 전 고지; 최종 전화 고지; 처리비:

District 는 체납 일자가 30 일 지나가고 있고 연체 수수료가 발생하게 될 경우 고객에게 이 사실을 48 시간 전에 미리 전화로 알리기 위해 합당하고 성실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District 는 또한 예정된 서비스 중단일보다 최소 7 일 전에 고객 또는 고객과 함께 거주하는 성인에게 전화로 고지하기 위해 합당하고 성실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District 에서 전화 연락을 할 수 없다면, 거주지를 방문하여 서비스 중단 고지서와 이 정책 사본을 남겨 두고 오기 위해 성실하게 노력할 것입니다.

9. 서비스 중단 기한:

모든 체납 수도 서비스 요금과 관련 수수료가 서비스 중단 서면 고지서에 지정된 날짜 오후 4 시 30 분까지 District 에 납부되어야 합니다.

10. 미납으로 인한 수도 서비스 중단:

District 는 계량기를 잠가서 수도 서비스를 중단할 것입니다. 계량기가 물리적으로 잠겨졌는지 여부에 상관 없이 청구 시스템의 서비스 중단 처리 수수료 50 달러(\$50.00)가 고객에게 청구됩니다.

11. 서비스 복원:

미납을 이유로 중단되었던 서비스를 재개하거나 계속 이용하려면, 고객이 해당 계좌에 체납된 모든 요금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District 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서비스를 재연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적어도 체납액 전액이 납부된 후 다음 정기 영업일이 끝나기 전까지는 서비스를 복원할 것입니다. District 직원이 아닌 사람이 수도 서비스를 켜거나 District 의 허가 없이 수도 서비스를 켜 경우에는 벌금이나 추가 요금 또는 수수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무단으로 복원해서 발생한 손해는 고객이 책임져야 합니다.

12. 부도 수표 처리 통지서:

수도 서비스 요금이나 기타 요금으로 납부받은 수표가 부도 수표인 경우, District 는 이를 미납 요금으로 처리합니다. District 는 이를 고객에게 전화로 통지하기 위해 합당하고 성실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부도 수표를 이유로 서비스를 중단한다면 영업일 기준으로 5 일 전에 서비스 중단을 알리는 고지서가 주택으로 배송됩니다. 부도 수표에 적힌 금액과 부도 수표로 내야 할 요금을 서비스 종료 고지서에 지정된 날짜 당일 또는 그 전 날짜에 납부하지 않으면 수도 서비스가 중단되고 잠금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부도 수표를 상환하고 부도 수표에 적힌 금액을 납부하기 위해 지불하는 모든 금액은 현금, 신용 카드, 또는 인증된 펀드로 내야 합니다.

13. 공과금을 둘러싼 분쟁:

고객은 공과금 고지서를 받은 후 5 일 이내에 공과금 액수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섹션의 목적에 한정해서, 해당된다면, 우편 발송일로부터 5 일 후 그리고 이메일 발송 직후에 고객이 청구서를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기한 내에 고객이 이의 제기를 하거나 조사 요청을 하면 District 책임자가 검토를 하여 결정 사항을 서면으로 고객에게 알립니다. 이 검토 서한에는 이 정책의 섹션 5 에 따라 고객이 분할 납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고려 내용이 포함됩니다. District 는 고객이 기한 내에 하지 못한 이의 제기나 조사 요청을 자유 재량에 따라 검토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의 제기나 조사 요청에는 항소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한 내에 이의 제기나 조사 요청을 한 고객은 District 가 자신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이사회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하려면 District 직원이 결정 사항을 우편으로 알린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으로 10 일 이내에 District 총무에게 항소 통지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 통지서 수령 시, District 총무는 이 항소 문제를 다가오는 이사회 회의에서 심리할 안건으로 정하고 회의날로부터 최소 10 일 전에 심리 시간과 장소를 기재한 서면 통지서를 고객에게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이사회 결정은 최종 결정입니다.

고객이 기한 내에 분쟁이나 항소를 제기하면, District 는 분쟁이나 항소가 계류 중인 동안에 수도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14. 입주자 또는 세입자가 District 고객이 되는 절차

이 섹션은 주거지 소유자, 집주인, 관리자, 또는 주거용 수도 서비스 주소의 운영자가 기록상 고객으로 등재되어 있고 미납으로 인한 수도 서비스 중단 의향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District 는 각 입주자가 서비스 약관에 동의하고 District 의 규칙과 규정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면 실제 주거지 입주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입주자 중 한 사람 이상이 District 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이후 해당 계좌에 발생한 요금에 대하여 책임질 의사가 있고 그럴 능력이 있는 경우, 또는 District 의 규칙과 규정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입주자에게 서비스 공급을 선택적으로 중단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물리적 수단이 District 에게 있는 경우, District 는 그러한 요구사항을 충족한 입주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체납 금액을 납부하지 않고도 고객으로 남을 수 있는 자격을 얻으려면, 체납 계좌에 등재된 고객이 현재 또는 과거에 집주인, 관리자, 또는 주택 임대 대리인이라는 것을 입주자가 검증해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검증 증거는 임대 또는 대여 계약서, 임대 영수증, 입주자가 해당 건물을 임대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정부 서류, 또는 District 의 자유 재량에 따라 시민법 섹션 1962 에 의거해 공개된 정보를 포함하되 여기에 국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District 와의 신용 관계를 확립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일정 기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면, 거주 허가를 받은 것과 그 기간 동안 임대료를 즉각 지불했다는 증빙 자료가 있는 것으로도 해당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됩니다.